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240호 2021. 12. 6.(월)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21-129호 석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1
○ 옥천군 고시 제2021-130호 마장리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3

【공 고】

○ 옥천군 고시 제2021-1378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5

【기 타】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2호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7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3호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예고 24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4호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31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5호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44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6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51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7호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61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8호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예고 ..68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9호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78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0호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85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1호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예고 97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고시 제 2021-129호

석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61조에 따라 석화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6.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석화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주민수요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가족 같은 석화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3. 사 업 비: 500백만원(국비 43백만원 , 지방비 457백만원)
4. 주요사업 내용
   가.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일원
   나. 면 적: 217.3ha
   다. 세부사업내용
      1) 기초생활기반확충: 돌꽃마을사랑채 조성
      2) 지역역량강화: 약물내기 복원, 진입로 꽃길풍경 조성
      3) 부대비: 기본계획, 세부계획, 사업관리비 등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6.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3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 게재생략
8. 기 타 : 사업계획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043-730-2563), 옥천군청 농촌활력과(043-730-3297)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석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사업비 변경 비교

[단위: 천원]

기능별	공종	기승인 (A)	변경 (B)	증감 (B-A)	증감액 절대값	변경비율
총사업비		500,000	500,000	0	45,856	9.2%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계	147,906	150,178	2,272	2,272	1.5%
	돌꽃마을 사랑채 조성	147,906	150,178	2,272	2,272	
지역 경관 개선	소계	235,659	234,152	-1,507	16,353	6.9%
	약물내기 복원	223,891	230,839	6,948	6,948	
	굴터널 디자인 개선	8,930	-	-8,930	8,930	
	진입로 꽃길풍경 조성	2,838	3,313	475	475	
지역 역량 강화	소계	116,435	115,670	-765	27,231	23.4%
	석화리 좋은마을 학교	33,916	35,913	1,997	1,997	
	시골마을 조경학교	13,998	-	-13,998	13,998	
	부대비용	68.521	79,757	11,236	11,236	

옥천군 고시 제 2021-130호

마장리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61조에 따라 마장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6.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마장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주민수요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가족 같은 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3. 사 업 비: 500백만원(국비 33백만원 , 지방비 467백만원)
4. 주요사업 내용
   가.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일원
   나. 면 적: 23.4ha
   다. 세부사업내용
      1)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장경로당 리모델링, 마장어울림마당 조성 등
      2) 지역역량강화: 리더교육,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3) 부대비: 기본계획, 세부계획, 사업관리비 등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6.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3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 게재생략
8. 기 타 : 사업계획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043-730-2563), 옥천군청 농촌활력과(043-730-3297)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마장리 마을만들기사업 사업비 변경 비교

[단위: 천원]

기능별	공종	기승인 (A)	변경 (B)	증감 (B-A)	증감액 절대값	변경비율
총사업비		500,000	500,000	0	60,468	12.1%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계	350,495	354.528	4.033	39.815	11.4%
	마장리경로당	197,000	218,924	21,924	21,924	11.1%
	마장어울림마당	88.641	80.917	-7.724	7.724	8.7%
	범죄예방 환경조성	64,854	54,687	-10,167	10,167	15.7%
지역 역량 강화	소계	78,505	66,696	-11,809	12,877	16.4%
	교육	32,995	23,360	-9,635	9,635	29.2%
	선진지견학	27,510	28,044	534	534	1.9%
	컨설팅	18,000	15,292	-2,708	2,708	15%
부대비	소계	71,000	78,776	7,776	7,776	10.9%
	부대비용	71,000	78,776	7,776	7,776	10.9%

옥천군 공고 제2021-1378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원 강청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수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지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강천천	이원 강청소하천정비사업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224 번지 일원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628-1 번지 일원	2,090	2,090	교량 4개소 등	´21.12.	´24.12.	미 개수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하천주변환경개선 도모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

이원 강청소하천정비사업 세부 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이원 강청소하천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홍수피해)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쾌적한 하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L=2.09km, 교량 4개소, 기타 부대시설 등

○ 총사업비 : 8,950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시 점	종 점	사 업 량	비 고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224번지 일원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628-1번지 일원	소하천정비 L=2.09km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 행 자 : 옥천군수(안전건설과장)

○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1. 12.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 리 자 : 옥천군수(안전건설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착공 / 공사구분	보할 (%)	공사기간 (36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비고
1. 토 공	13.8	2.3	2.3	2.3	2.3	2.3	2.3	
2. 호 안 공	20.8	3.4	3.5	3.5	3.5	3.5	3.4	
3. 구 조 물 공	3.5	0.7	0.7	0.7	0.7	0.7		
4. 포 장 공	2.4	0.4	0.4	0.4	0.4	0.4	0.4	
5. 교 량 공	49.0	9.8	9.8	9.8	9.8	9.8		
6. 옹 벽 공	1.5	0.3	0.3	0.3	0.3	0.3		
7. 부 대 공	9.0	1.5	1.5	1.5	1.5	1.5	1.5	
월 별 진 도	100.0	18.4	18.5	18.5	18.5	18.5	7.6	
누 계 진 도		18.4	36.9	55.4	73.9	92.4	10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단 위 : 백만원)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이후	비고
8,950	1,280	140	7,530	

12. 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3.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3-730-3523)

붙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붙임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 편입토지 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1	이원면 건진리	209-4	전	2,684	38	충청북도				
2	이원면 건진리	739-43	천	126,735.4	331	국				
3	이원면 건진리	224	임	1,997	1,167	충청북도				
4	이원면 건진리	225	전	823	34	충청북도				
5	이원면 건진리	755-1	도	446	302	국				
6	이원면 건진리	223	천	112	112	충청북도				
7	이원면 건진리	221-1	천	971	182	충청북도				
8	이원면 건진리	222-1	천	111	91	충청북도				
9	이원면 건진리	221-2	천	222	186	충청북도				
10	이원면 건진리	218	천	126	114	충청북도				
11	이원면 건진리	219-1	천	533	428	충청북도				
12	이원면 건진리	217-1	천	1,773	1,773		미등기			
13	이원면 건진리	216-2	천	2,423	2,423		미등기			
14	이원면 건진리	536-1	천	62	23	충청북도				
15	이원면 건진리	739-198	천	743	139	국				
16	이원면 건진리	215-2	천	1,939	1,939	경북 김천시 용두동	진*천			
17	이원면 건진리	739-199	천	212	1	국				
18	이원면 건진리	575-3	천	171	171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주*우			
19	이원면 건진리	739-57	천	12,136	11,426	국				
20	이원면 건진리	576-4	천	1,634	1,635	옥천군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21	이원면 건진리	577	임	354	354		미등기			
22	이원면 건진리	571	도	11,660	755	충청북도				
23	이원면 건진리	570-6	전	81	81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김*귀			
24	이원면 건진리	766	도	1,999	136	국				
25	이원면 건진리	590-1	임	510	510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김*성			
26	이원면 건진리	589-4	잡	306	306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이*숙			
27	이원면 건진리	586-2	전	614	614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	김*권			
28	이원면 건진리	748-90	철	652	652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이*열			
29	이원면 건진리	748-9	철	605	95	옥천군 이원면 강청길	㈜에*존			
30	이원면 건진리	748-69	철	89	13	옥천군				
31	이원면 강청리	95-2	대	161	161	옥천군 이원면 신흥5길	최*순			
32	이원면 강청리	616	도	228	64	국				
33	이원면 강청리	619	도	1,749	119	국				
34	이원면 건진리	748-66	철	42	12	옥천군				
35	이원면 강청리	130-16	도	132	69	옥천군				
36	이원면 강청리	130-18	대	15	15	경기도 화성시 동타순환대로	곽*근			
37	이원면 강청리	130-15	도	53	28	옥천군				
38	이원면 강청리	615-27	천	582	36	국				
39	이원면 강청리	129-1	전	2,119	2,119	옥천군 군북면 환산로	노*왕 외 2인			
40	이원면 강청리	128-6	임	844	844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주*용			
41	이원면 강청리	615-28	천	1,084	55	국				
42	이원면 강청리	124-1	천	757	745	국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43	이원면 강청리	124-10	천	93	16	국				
44	이원면 강청리	112-3	천	102	102	대전시 서구 청사서로	유*열			
45	이원면 강청리	125	임	427	41		미등기			
46	이원면 강청리	125-1	천	122	122		미등기			
47	이원면 강청리	113-3	대	77	77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정*서			
48	이원면 강청리	615	천	8,534	8,382	국				
49	이원면 강청리	615-1	천	68	20	국				
50	이원면 강청리	124-7	천	157	153	국				
51	이원면 강청리	615-2	천	136	4	국				
52	이원면 강청리	615-3	천	64	62	국				
53	이원면 강청리	124-9	천	88	78	충청북도				
54	이원면 강청리	123-3	천	35	23	국				
55	이원면 강청리	114-9	대	4	4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연*희			
56	이원면 강청리	615-4	천	576	532	국				
57	이원면 강청리	115-8	전	179	179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유*수			
58	이원면 강청리	115-9	대	4	4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유*완			
59	이원면 강청리	615-19	천	525	509	국				
60	이원면 강청리	116-3	대	196	196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박*구			
61	이원면 강청리	615-21	천	46	44	국				
62	이원면 강청리	116-2	철	1,035	1,035	국				
63	이원면 강청리	615-20	천	733	748	국				
64	이원면	117-2	철	235	235	국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강청리									
65	이원면 강청리	117-3	대	137	137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강청*구 마을회			
66	이원면 강청리	615-9	천	1,007	998	국	국			
67	이원면 강청리	615-6	천	156	8	국	국			
68	이원면 강청리	118-18	과	12	12	옥천군 이원면 이원역길	정*화			
69	이원면 강청리	618	도	1,537	3	국				
70	이원면 강청리	118-17	구	67	6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1	이원면 강청리	118-4	과	180	65	옥천군				
72	이원면 강청리	118-11	철	60	36	국				
73	이원면 강청리	329-13	전	45	45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전*환			
74	이원면 강청리	329-3	철	40	40	옥천군				
75	이원면 강청리	617-6	구	119	36	국				
76	이원면 강청리	118-10	철	811	600	국				
77	이원면 강청리	615-34	천	180	180	국				
78	이원면 강청리	622	도	2,801	383	국				
79	이원면 강청리	119-2	철	1,088	17	국				
80	이원면 강청리	329-11	철	274	274	옥천군				
81	이원면 강청리	623	구	10,901	8	국				
82	이원면 강청리	330-2	도	5,847	245	옥천군				
83	이원면 강청리	329-10	전	21	12	국				
84	이원면 강청리	329-12	철	281	157	옥천군				
85	이원면 강청리	617-10	구	85	85	국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86	이원면 강청리	617-11	구	864	15	국				
87	이원면 강청리	118-2	철	3,765	14	국				
88	이원면 강청리	330-9	전	535	6	국				
89	이원면 강청리	325-2	철	109	16	국				
90	이원면 강청리	325-7	천	41	41	국				
91	이원면 강청리	325-4	천	45	29	국				
92	이원면 강청리	325-8	천	247	247	경북 김천시 부곡동	진*희			
93	이원면 강청리	615-35	천	1,681	723	국				
94	이원면 강청리	325-6	천	11	6	옥천군				
95	이원면 강청리	325-5	천	486	486	옥천군				
96	이원면 강청리	326-3	과	283	283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백*기 외 1인			
97	이원면 강청리	326-1	천	575	575	옥천군				
98	이원면 강청리	326-4	과	52	52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백*기 외 1인			
99	이원면 강청리	321-14	전	517	517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백*기 외 1인			
100	이원면 강청리	321-18	전	3	3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백*기 외 1인			
101	이원면 강청리	321-8	천	1,217	1,214	옥천군				
102	이원면 강청리	321-19	전	38	38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백*기 외 1인			
103	이원면 강청리	321-15	구	54	5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04	이원면 강청리	321-10	구	105	10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05	이원면 강청리	615-14	천	917	10	국				
106	이원면 강청리	321-16	전	104	104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백*기 외 1인			
107	이원면 강청리	321-11	천	172	172	옥천군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108	이원면 강청리	321-17	구	47	4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09	이원면 강청리	321-2	천	397	397	옥천군				
110	이원면 강청리	320-13	전	11	11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조*원			
111	이원면 강청리	321-6	구	118	1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12	이원면 강청리	321-12	구	47	4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13	이원면 강청리	321-13	천	77	77	옥천군				
114	이원면 강청리	321-7	임	71	71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백*기 외 1인			
115	이원면 강청리	297-4	답	58	58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조*연			
116	이원면 강청리	320-11	전	215	215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윤*태			
117	이원면 강청리	320-10	전	18	18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윤*태			
118	이원면 강청리	320-12	천	145	145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이*재			
119	이원면 강청리	320-9	천	327	327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이*재			
120	이원면 강청리	299-23	천	237	237	옥천군 이원면 강청4길	곽*성			
121	이원면 강청리	299-22	천	211	211	옥천군				
122	이원면 강청리	298-7	답	388	388	영동군 심천면 고당심천길	정*희			
123	이원면 강청리	625	도	4,032	279	국				
124	이원면 강청리	260-1	천	125	111	옥천군				
125	이원면 강청리	260-2	답	281	281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윤*일			
126	이원면 강청리	267-3	천	789	98	옥천군				
127	이원면 강청리	394-1	답	199	199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한*임			
128	이원면 강청리	661	도	341	48	국				
129	이원면 강청리	395-2	답	215	215	대전광역시	윤*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서구 도마동				
130	이원면 강청리	395-3	답	121	1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권*종			
131	이원면 강청리	657	도	2,542	33	국				
132	이원면 강청리	409-1	답	296	296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권*홍			
133	이원면 강청리	263-2	답	20	20	국				
134	이원면 강청리	410-2	답	268	268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권*환			
135	이원면 강청리	263-3	천	655	448	옥천군				
136	이원면 강청리	412-1	답	164	164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권*환			
137	이원면 강청리	413-1	잡	272	272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강청*리 마을회			
138	이원면 강청리	662	구	1,207	98	국				
139	이원면 강청리	510-3	답	53	53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곽*옥			
140	이원면 강청리	508-3	답	42	42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이*년 외1인			
141	이원면 강청리	510-4	답	49	49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곽*옥			
142	이원면 강청리	510-5	답	462	462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곽*옥			
143	이원면 강청리	625-3	도	592	18	국				
144	이원면 강청리	511-3	도	446	33	옥천군				
145	이원면 강청리	626	구	5,296	6	국				
146	이원면 강청리	506-3	답	2	2	옥천군 이원면 강청5길	정*철			
147	이원면 강청리	515-1	답	322	322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이*규			
148	이원면 강청리	506-4	답	8	8	옥천군 이원면 강청5길	정*철			
149	이원면 강청리	628	도	2,172	4	국				
150	이원면 강청리	506-5	답	136	136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정*열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151	이원면 강청리	615-17	천	25,324	5,007	국				
152	이원면 강청리	629	도	545	16	국				
153	이원면 강청리	516-1	답	202	202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이*규			
154	이원면 강청리	298-1	답	1,770	57	영동군 심천면 고당심천길	정*희			
155	이원면 강청리	259-3	도	110	55	옥천군				
156	이원면 강청리	259-1	대	99	99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강청*리 마을회			
157	이원면 강청리	259-2	대	387	303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강청*리 마을회			
158	이원면 강청리	504-2	답	13	13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정*열			
159	이원면 강청리	517-1	답	273	273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이*규			
160	이원면 강청리	547-1	답	213	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안*현			
161	이원면 강청리	546-5	답	61	61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연안이 씨***** **종중			
162	이원면 강청리	493-1	답	11	11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이*규 외 10인			
163	이원면 강청리	548-4	답	20	2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이*규 외 10인			
164	이원면 강청리	548-5	답	4	4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이*규 외 10인			
165	이원면 강청리	548-6	답	27	27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이*규 외 10인			
166	이원면 강청리	546-6	전	12	12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김*란			
167	이원면 강청리	508-1	답	1,158	368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이*년 외1인			
168	이원면 강청리	510-6	답	585	429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곽*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2호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및 권고(안 제5조～제6조)

○ 실태조사, 자료제공 요청(안 제7조～제8조)

○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안 제9조～제10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및 표창(안 제11조～제12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5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나. 옥천군의회
   다. 옥천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라. 옥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수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장할 수 있다.

1. 옥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2. 옥천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공 요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

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표창)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3호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추복성, 손석철,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군수, 승계농업인)(안 제1조 ~ 제3조)

○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안 제4조 ~ 제5조)

○ 승계농업인 선정, 사후관리(안 제6조 ~ 제7조)

○ 준용(안 제8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한다)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하 “승계농업인”이라 한다)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에 주소를 둔 만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승계농업인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승계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승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3. 농업 관련 창업자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승계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승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승계농업인 선정 심의

2. 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승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등

제6조(승계농업인 선정) 군수는 별지 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계농업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비고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비고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_____에게서 신청인에게 승계하였거나 승계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 주1) 확인자는 승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주2)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4호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김외식, 손석철, 곽봉호,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귀농·귀촌 지원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 귀농·귀촌 중간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 귀농·귀촌위원회 확대 운영(안 제5조)

○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5호 중 “이란 제3호를 준용하되,”를 “이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귀촌 육성·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3(귀농·귀촌지원 중간조직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책임자 1명, 실무자 2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사업

2.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④ 지원단 구성, 직원선발, 근무 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귀농·귀촌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일부사업을”로 한다.

3. 귀농・귀촌인 교육훈련 지원(예비 귀농·귀촌인 포함)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귀촌인”이란 제3호를 준용하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이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신 설>	제4조의2(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귀촌 육성·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귀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조의3(귀농·귀촌지원 중간조직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책임자 1명, 실무자 2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

	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④ 지원단 구성, 직원선발, 근무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장 귀농·귀촌 위원회	<삭 제>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원위원회----------. ② ---------- 15명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 ----------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1.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귀농·귀촌 지원 사업	<삭 제>
제11조(귀농·귀촌인 신고) ① 귀농·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신고서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귀농·귀촌인 신고) ① ---------- 군수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예비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인 교육훈련 지원	3. 귀농·귀촌인 교육훈련 지원 (예비 귀농·귀촌인 포함)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일부사업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삭 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5호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고령 · 영세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 ·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고령 · 영세농업인” 정의 신설(안 제3조)

- 70세 이상 농업인 중 1,000 ~ 5,000㎡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 “고령 · 영세농업인” 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호)

- 고령 · 영세농업인: 임대료 등의 2분의 1 감면

○ 불합리한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세대 당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세대 당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임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 등의”를 “임대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 등”을 “임대료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을 “(임대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료를”을 “임대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인으로서”를 “장애인, 고령·영세농업인으로서”로, “임대료”를 “임대료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고령·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세대당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농업기계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출고 및 임작업 시행 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9조(임대료등) ① ------ 임대료등 ----------. ② ---------- 임대료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	제10조(임대료등 감면) -------- 임대료등을 ----------. ----------

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1. ---------- ---------- ---------- ---------- ---------- ---- 장애인, 고령·영세농업인으로서 ---------- 임대료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6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병역 명문가 예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우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보다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안제2조)

○ 각종 우대 사항 적용을 위한 적용범위 내용 정비(안제3조)

○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한 감면 기준 구체화(다른 조례의 개정)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병역명무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의 주차요금 100분의 50

③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제1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시설이용료 감면기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감 면 율	
	별표1 가목의 경우	별표1 나목의 경우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0%	

⑤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수강료 감면기준)에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⑥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일수	입 증 서 류	비 고
다자녀 (옥천군)	50% / 3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 미성년자 3자녀 이상
다자녀	50% / 1일		
국가유공자	30% / 1일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30% / 1일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	
업무협약	30% / 제한없음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임장	
장애인	30% / 1일	장애인등록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대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0%/1일	병역명문가증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군민	30% / 제한없음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비수기 한정
주차료 면제	제한없음	해당 증명서류	※ 군민 7·8월 제외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8조 관련

※ 시설사용료 감면혜택 중복 적용 불가

- 사용료 감면 혜택은 예약 당사자에게 지급

※ 감면 적용 시 입증서류 제출

※ 주차료 면제 대상자: 옥천군민,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장애인(등급제한 없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숙박시설 이용자, 공무수행자

⑦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임대료등의 2분의 1 감면

⑧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⑨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생 략)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와 그 가

할 수 있다.	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7호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곽봉호, 김외식,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스마트복합쉼터의 설치 및 위치 등(안 제1조～제2조)

○ 관리운영 및 상생협력 등(안 제3조～제4조)

○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회의 등(안 제5조～제8조)

○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 지원 및 준용(안 제9조～제11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위치)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 이용자들에게는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복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옥천군 관내 농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축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위·수탁협약에 따른다.

제4조(상생협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쉼터가 위치한 지역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특산물 분야 학계·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군수는 쉼터를 위탁한 경우 쉼터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위

탁한 경우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① 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도 불구하고 쉼터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1조(준용) 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8호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예고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옥천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사장 안전관리(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안 제4조 ~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안 제6조)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공사장 환경, 공공도로 및 주변 안전·환경 점검(안 제8조 ~ 제9조)

5.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옥천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장소
   나.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장소
   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는 장소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다만, 학교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주변 거주자, 보행자 등 주민의 안전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도로

7. “중・대형 공사 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8. “통학로”란 학교를 오고 갈 때에 이용되는 주 이동 도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1. “주택건설공사”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기술 진흥법」, 「소음·진동관리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과 그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 제2호의 학교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제출)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

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를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라.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공사장 환경관리 계획(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폐수 등 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6.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여건을 반영

하고 주민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반영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안전관리계획서의 교통분야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는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인 경우(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관계자 또는 인근주민으로 구성

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주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주민 등이 포함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주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체공사 등 대규모 석면제거작업으로 주변 초·중·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

게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군수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소음·진동관리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9호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손석철, 김외식, 곽봉호,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조 ~ 제3조)

○ 옥천군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안 제4조 ~ 제7조)

○ 실태조사 및 육성지원(안 제8조 ~ 제9조)

○ 전문가 자문 등(안 제10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건강관리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0호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안 제6조 ~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①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옥천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0호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안 제6조 ~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①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옥천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1호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추복성 의원

3. 제정이유

○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자(안 제4조)

○ 지원기준(안 제5조)

○ 지원신청, 결정(안 제6조 ~ 제7조)

○ 수령자격 및 처리비용 환수(안 제8조 ~ 제9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소방기본법」 제29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 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며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 400만원
2. 반소(30%이상 70%미만 소실) : 200만원
3. 부분소(10%이상 30%미만 소실) : 100만원

②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확인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 재 피 해 지 원 신 청 서

□ 피해자 정보 및 피해내역

주 소	옥천군 읍/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피해발생 위치	옥천군 읍/면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				
피해구분(정도) (※전소,반소,부분소)	*(※ 사실 확인에 따라 기재한 피해구분과 달리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화재보험가입유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옥천군수가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여부 확인과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피해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인 피해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한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약 서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옥천군수 귀하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